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9
----------	-----

제출년월일 : 2023.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확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수요자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안 제5조, 제6조)
- 다.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보조금 교부방법(안 제7조 ~ 제9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2조 ~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 나. 예산조치 : 5년간 약 620억 원 소요(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 다. 합 의 : 도 에너지과 기협의('23년 2월), 군 예산팀 합의('23년 4월)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4. 28. ~ 2023.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 요금으로

도지사가 승인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세대당 분담금을 말한다.

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9.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0. “인입배관분담금”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 즉, 인입배관 설치 시 사업자와 수요자가 분할하여 부담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1.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에서 세대당 분담금이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12.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

자가 기존 배관과의 연장거리, 지역여건, 시설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
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2조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군수는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1회에 한하여 7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전액 지원하되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의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배관노선, 사업량, 사업비 등을 설명한다.

② 군수는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④ 예산범위 초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 관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

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교부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범위)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부서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3. 사회단체 대표 등
4.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이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8조(사업자·보조사업자 제재)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사업의 전부·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가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

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 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확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수요자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른 비용발생(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
-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기존 배관과의 연장거리, 지역여건, 시설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2조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군수는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시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1회에 한하여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전액 지원하되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의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읍면 시가지(경제성 확보 가능지역) 7,379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단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미탄방립 제외

* 사업연도 대관령(24년) → 진부(25년) → 용평(26년) → 봉평(27년) → 대화(28년) → 평창(29년)

< 읍면별 도시가스 공급가능 세대수 >

행정구역	공급가능 지역	공급가능 세대수			예 상 보급률	비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 계		
평 창 읍	중리,하리,천변리	657	584	1,241	29.3%	
대 화 면	대화1~5리	185	106	291	10.5%	
봉 평 면	창동리, 무이리	665	282	947	31.0%	
용 평 면	용전리, 장평리	51	68	119	7.2%	
진 부 면	상진부리,하진부리	1,712	592	2,304	54.2%	
대관령면	횡계리,수하리	2,113	364	2,477	71.9%	
합 계		5,383	1,996	7,379	33.7%	

○ 도시가스 설치 부담범위는

i) 인수기지에서 공급관리소, 지구정압기 인입관까지는 가스공사 부담

※ 한국가스공사 평창관리소(횡계3리)

ii) (빨강색) 지구정압기에서 지역정압기까지(본관)는 가스공급사업자의 부담
50%, 강원도 보조 15%, 평창군 보조 35%

<도시가스 공급 배관 사업범위>



iii) (파랑색) 지역정압기에서 사용자공급관은 저압공급관으로 가스공급사업자 50%, 사용자 50%임(조례 적용 시 사용자분 70% 보조. 한도액 300만원)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 사업범위>

저압공급관 비용 부담 • 도시가스공급사업자(50%) • 평창군(35%) • 세대당자부담(15%)	사유지 내 지역주민 비용 부담 100%
인입배관금 비용 부담	
• 세대 및 사업자 협의부담	
• 일반시설분담금 : 계량기 등급별 개수별 비용분담 • 집안 내관공사비 : 가스배관 및 보일러비용 • 기존 시설 철거비	

○ 읍면별 도시가스 사업계획도 “별도첨부”

나. 추계 결과

○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비는 본관 및 공급관 시설 설치비로 5개년 동안 약 6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도시가스 배관망 관로의 지표면 및 구조물 상태에 따라 변수가 발생되어 실시설계 단계를 거치게 되면 공사비의 증액이 예상된다.

< 배관망 공급 세대수 및 공사규모 >

행정구역	공급가능 세대수(세대)			공사규모(m)			기준 세대수	비 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 계	본 관	공급관	소 계		
평 창 읍	584	657	1,241	15,700	8,020	23,720	15	
대 화 면	106	185	291	12,540	3,872	16,412	8	
봉 평 면	282	665	947	18,372	3,760	22,132	25	
용 평 면	68	51	119	14,063	3,040	17,103	4	
진 부 면	592	1,712	2,304	18,141	8,260	26,401	28	
대관령면	364	2,113	2,477	-	7,920	7,920	31	
합 계	1,996	5,383	7,379	78,816	34,872	113,688	-	

- 주) 1. 기준세대수 : 경제성 확보 세대수, 공급관 100m당 세대수 = 세대수 ÷ 공급관 길이 x 100
 2. 읍면별 배관망 공사계획도 별도첨부

< 공급가능 세대 수요가분담금 >

단위 : 천원

행정구역	배관망 사업비			세대당 기준분담금 (원/세대)	경제성미달지역 수요가분담액	사업연도
	본 관	공급관	소 계			
평 창 읍	8,242,500	3,021,250	11,263,750	1,222,300	1,516,874	29년
대 화 면	7,602,375	1,437,200	9,039,575	2,777,956	808,385	28년
봉 평 면	8,726,969	1,401,000	10,127,969	511,144	484,053	27년
용 평 면	12,402,500	1,175,000	13,577,500	6,111,501	727,269	26년
진 부 면	11,829,525	3,049,750	14,879,275	396,851	914,345	25년
대관령면	-	3,067,500	3,067,500	304,679	754,690	24년
합 계	48,803,869	13,151,700	61,955,569	-	5,205,616	

- 주) 1. 세대당 분담금 : 공급관 100m당 48세대 기준
 2. 세대당 기준분담금 :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기준 별표2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
 3. 경제성미달지역 수요가 분담금 : 세대당분담금 x 대상 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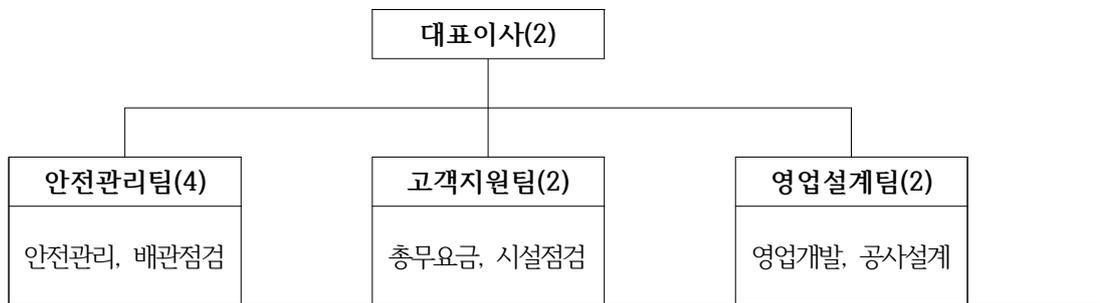
다. 재원조달 방안

- (1) 지방비 및 사업자 부담 등 협의(2023. 2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에너지과
 - 도비 15%, 군비 35%, 사업자(명성파워그린) 50%
- (2) 평창군 민간사업자 (주)명성파워그린은 자기자본금 이외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시설 용자사업을 통해 자금확보 예정

□ 기구 및 조직 : 명성파워그린(주)

<회사개요>

- 소재지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송전1길 81-3 / 용평면 장평리 사무실('28년) 개소예정
 - 대 표 : 박정학, 엄정환(임직원수 1본부 3팀, 10명) ※ 군청 경제과 에너지팀 협조
 - 자본금 : 37억 원
 - 회사연혁
 - 2012. 9. 강원 제6권역(평창) 도시가스사업자 선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 2015. 8. 대관령면 도시가스 배관공사 착공, 배관망 설치(L=9.5km)
 - 2016. 11. 대관령면 풍림아이원 리조트 LNG 공급개시
 - 2017. 11. 올림픽선수촌아파트 834세대 공급
 - 2020. 6. 대관령면 황계리 도시가스 공급(현재 1,664세대) 보급률 7.5%
- ※ 드론활용 구간 순찰 및 안전점검 장비 추가 확보



※ 배관망 15km 증설마다 배관점검원 증원(9)시 3팀 17명 운영

3. 작성자

작성자	평 창 군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김남섭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엄봉석 연 구 원 조정래
연락처	(033) 330 - 2269

< 연도별 비용추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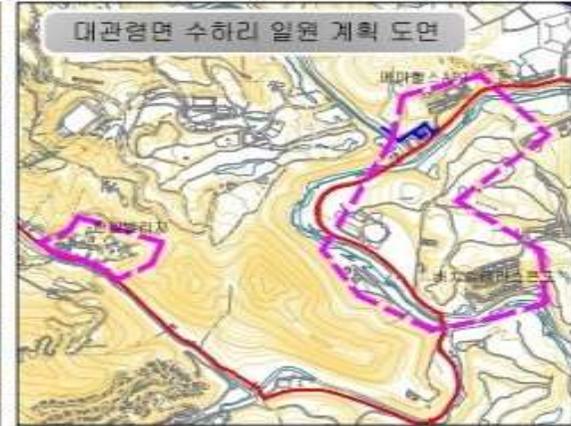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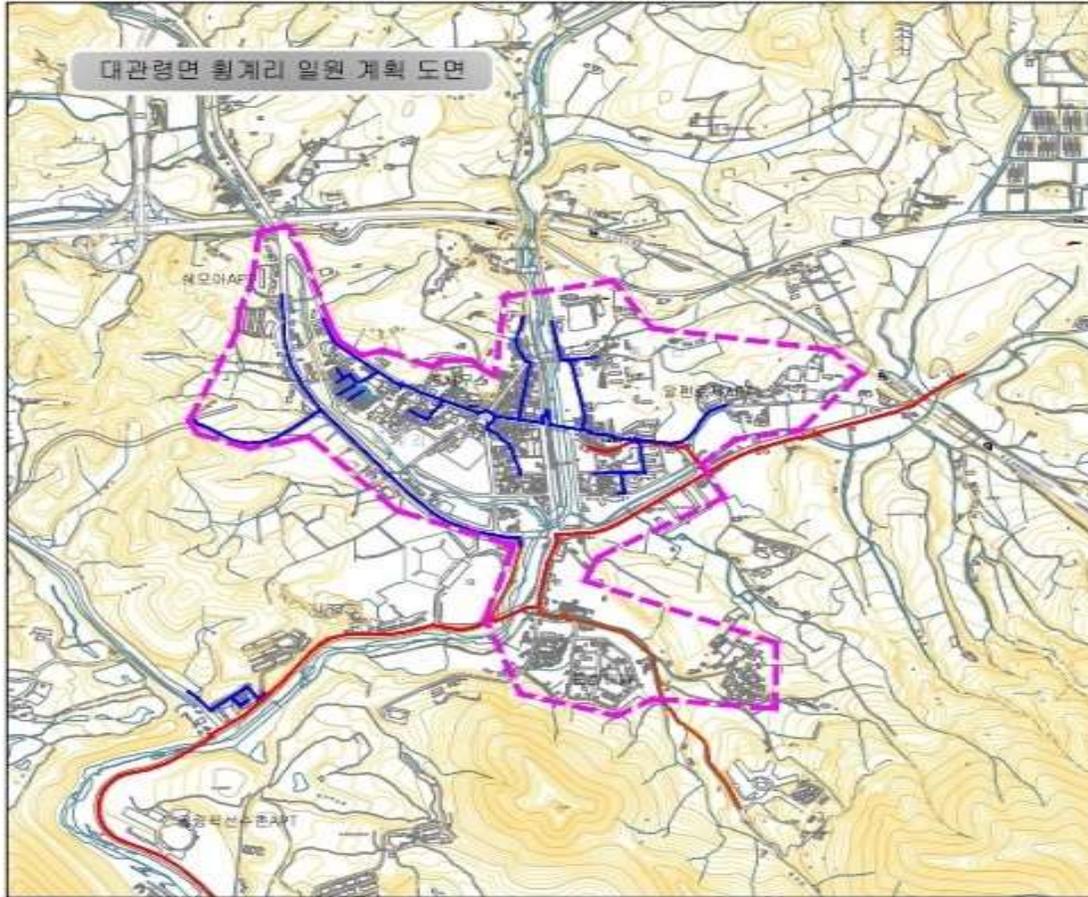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6차년도 (2029)	합계	
세 입								
세 출								
도시가스 배관망구축	3,067,500	14,879,275	13,577,500	10,127,969	9,039,575	11,263,750	61,955,569	
재원 조달	3,067,500	14,879,275	13,577,500	10,127,969	9,039,575	11,263,750	61,955,569	
의 존 재 원	소 계							
	도비 보조금	0	1,774,429	1,860,375	1,309,045	1,140,356	1,236,375	7,320,580
	지방 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지방세	1,073,625	5,207,746	4,752,125	3,544,789	3,163,851	3,942,313	21,684,44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도시가스사)	1,533,750	7,439,638	6,788,750	5,063,985	4,519,788	5,631,875	30,977,786	
해외자본								
기타 (주민자부담)	460,125	457,463	176,250	210,150	215,580	453,188	1,972,756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배관망 구축사업 공사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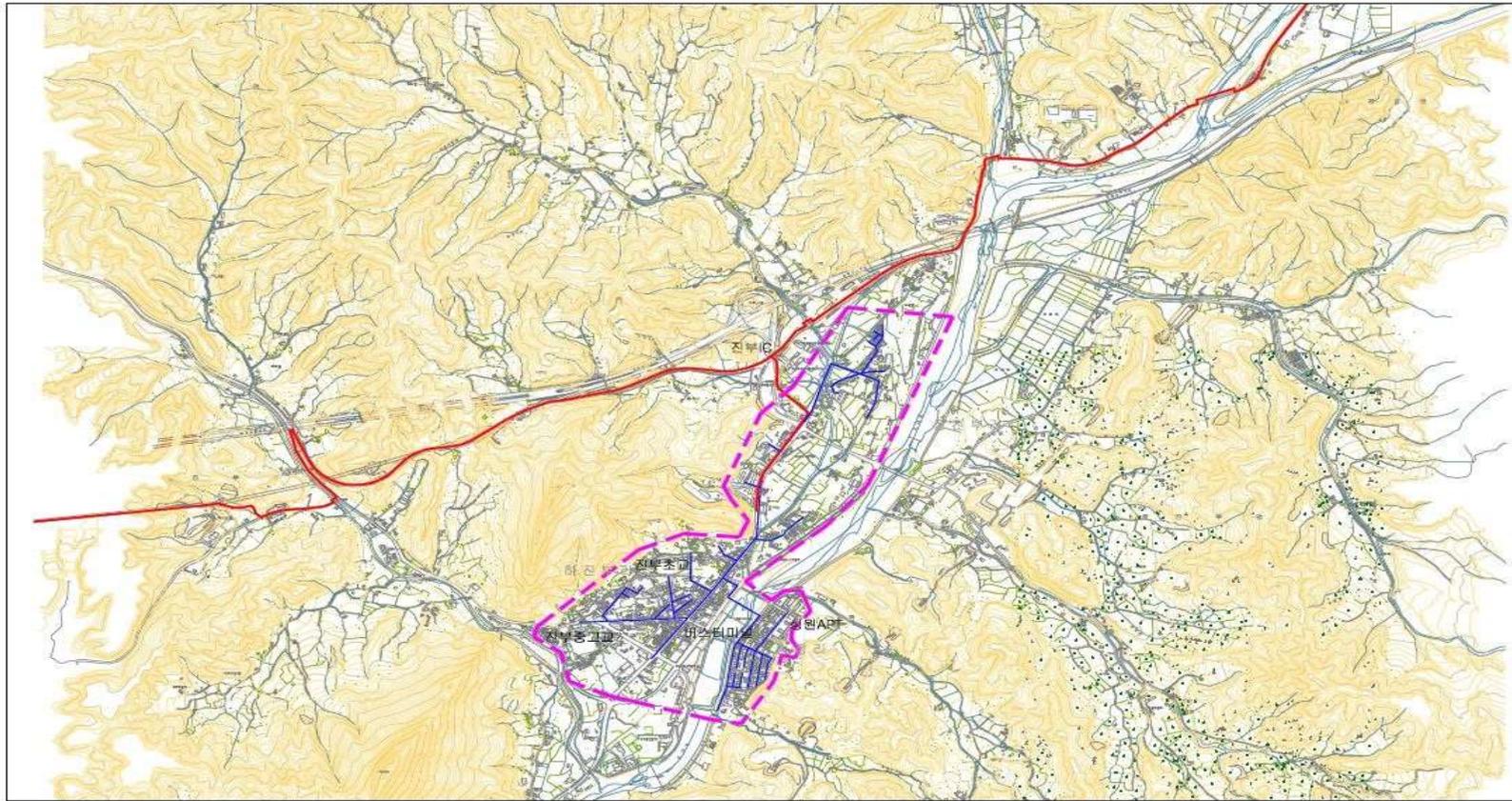
대관령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사업명 PROJECT
평창군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

도면명 DRAWING
대관령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계획도

진부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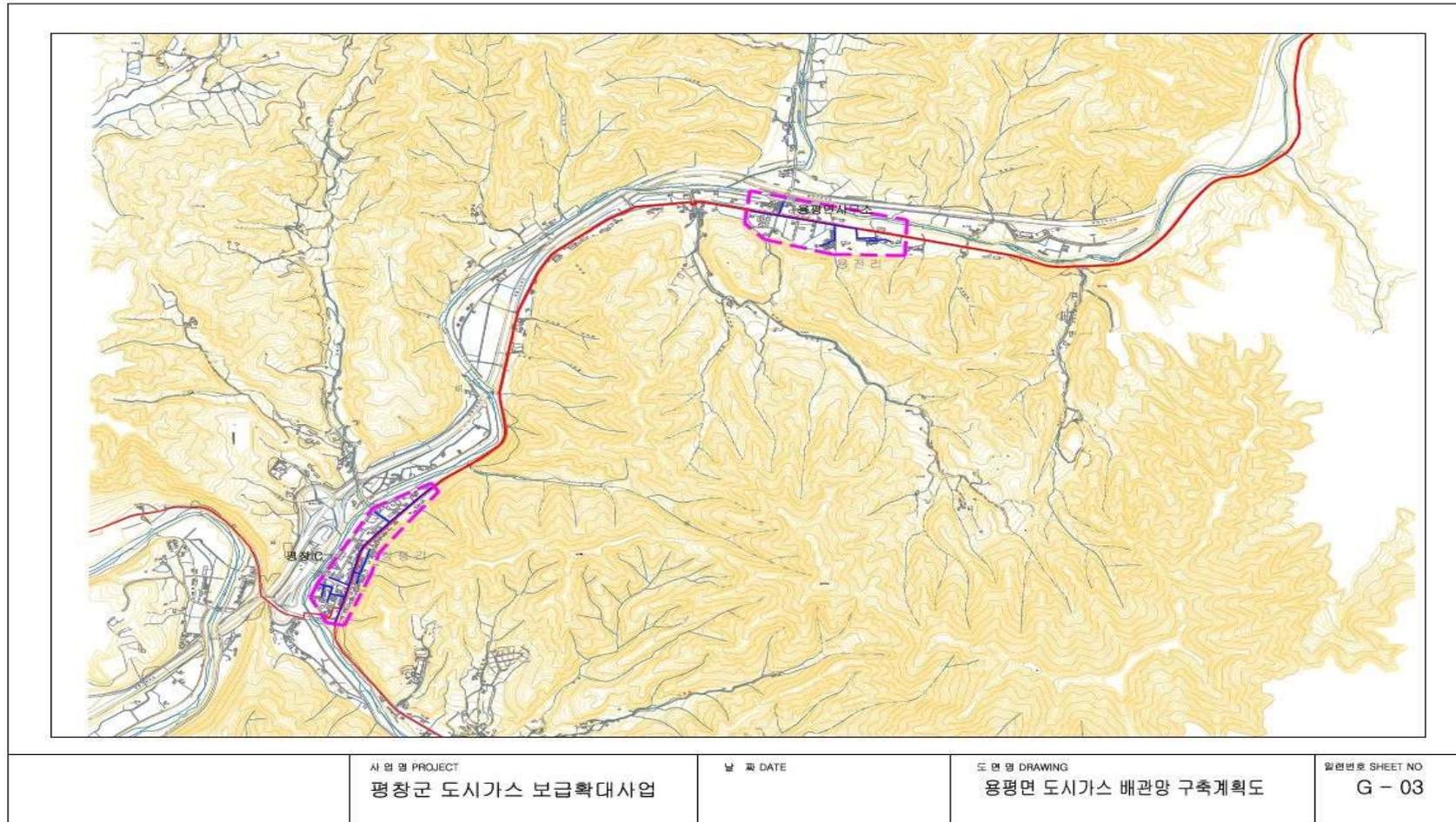
사업명 PROJECT
 평창군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

날짜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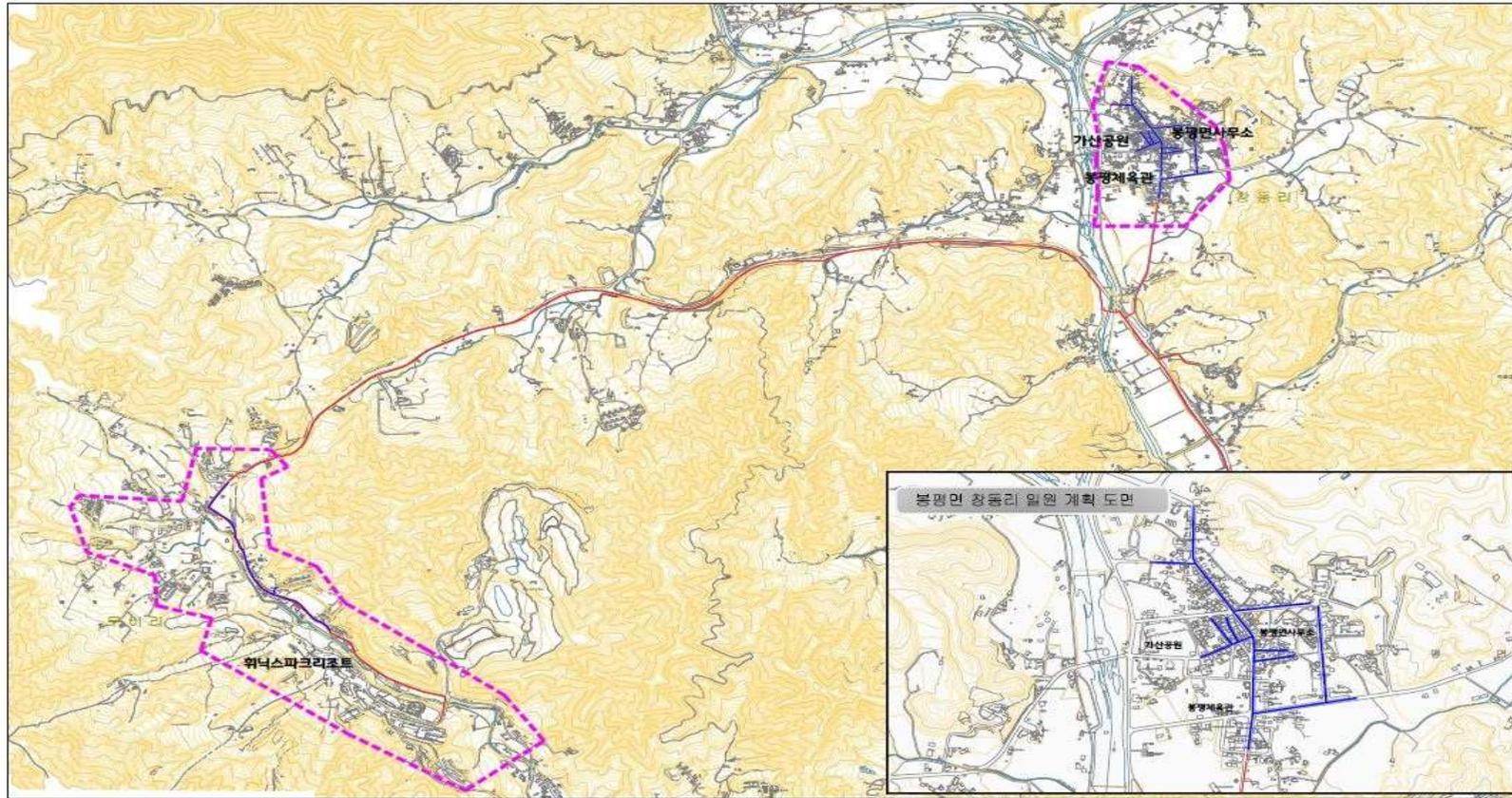
도면명 DRAWING
 진부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계획도

도면번호 SHEET NO
 G - 02

용평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봉평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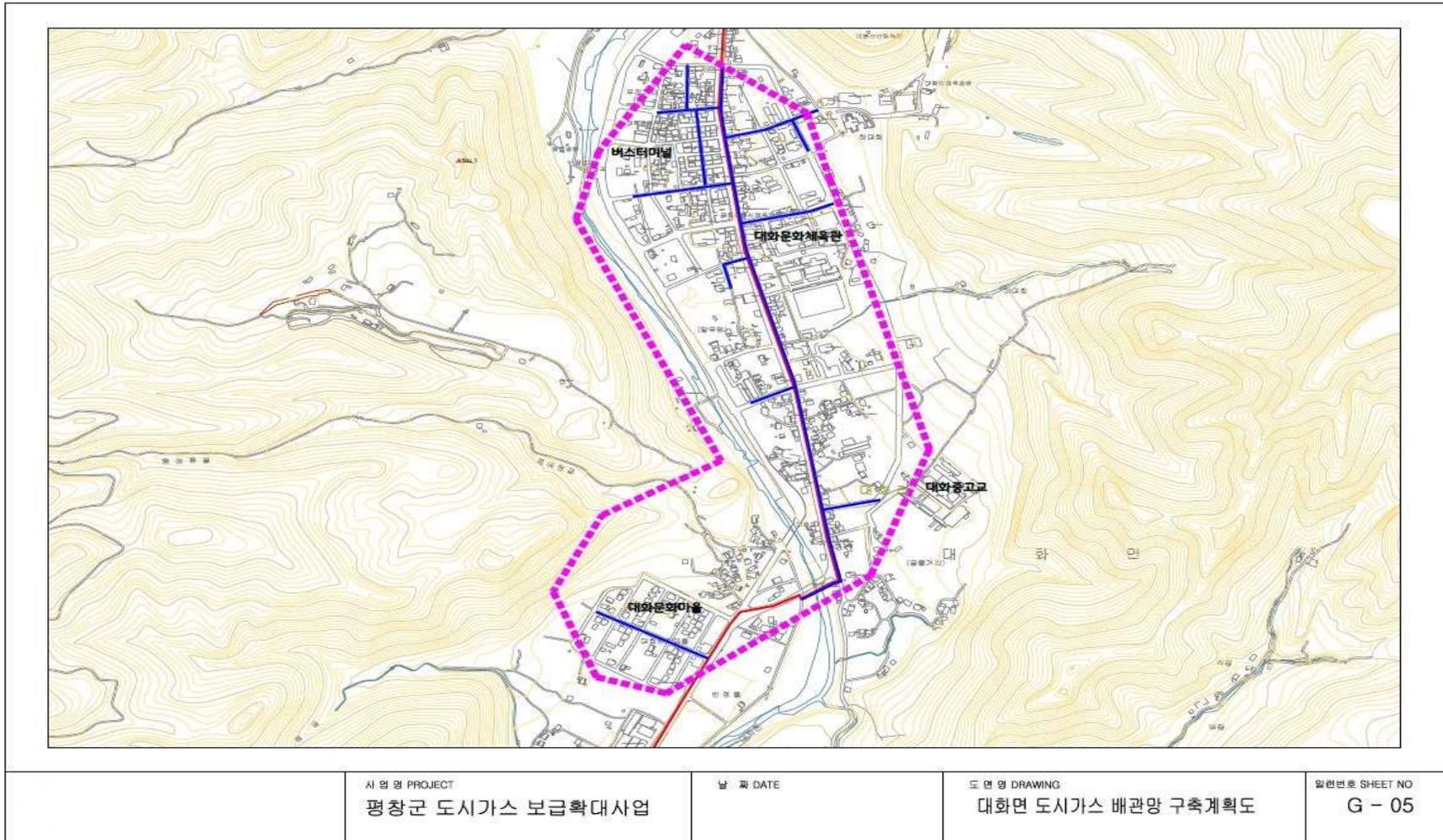
사업명 PROJECT
평창군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

날 짜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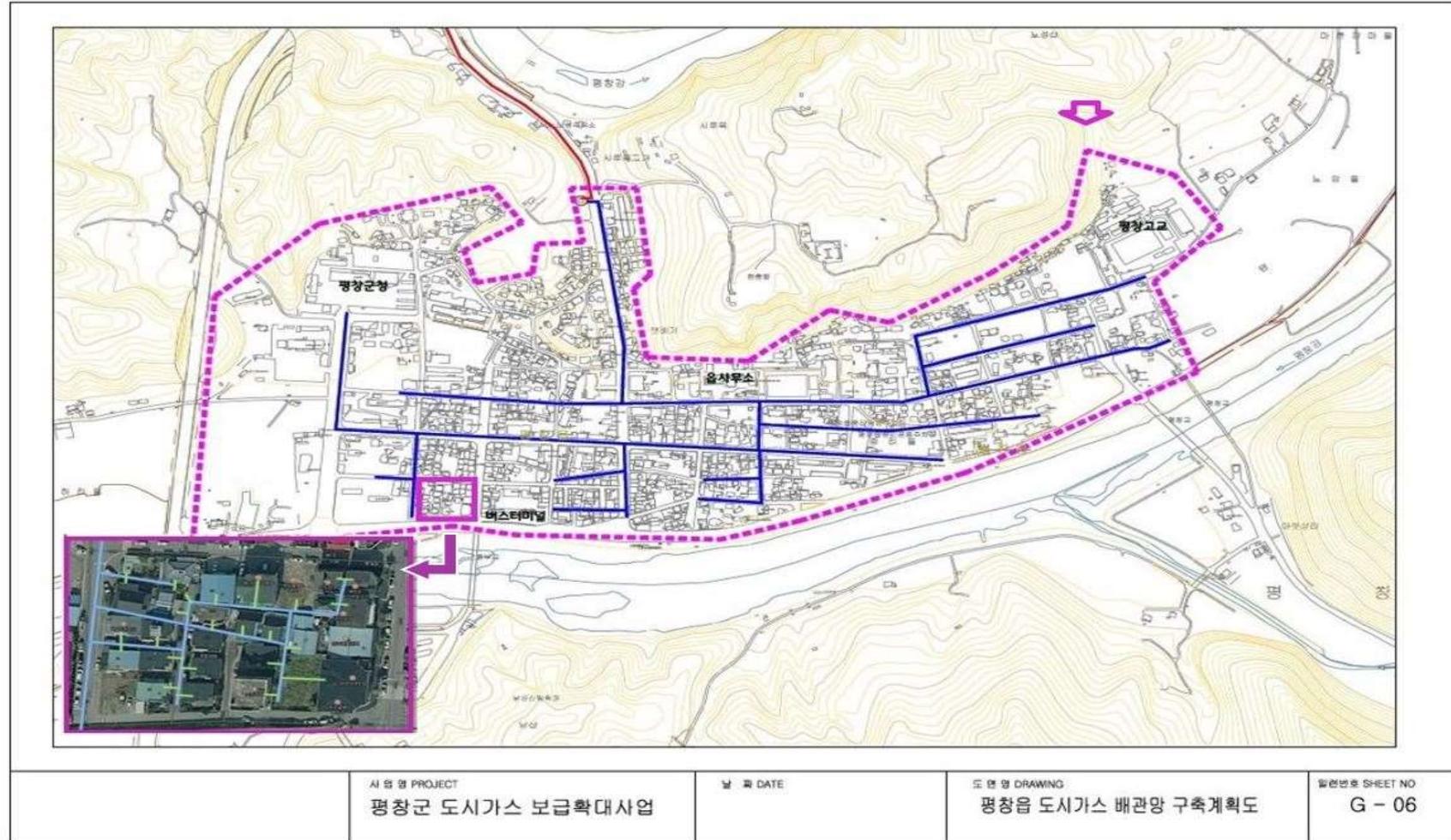
도면명 DRAWING
봉평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계획도

일련번호 SHEET NO
G - 04

대화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평창읍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시 역 명 PROJECT
 평창군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

날 목 DATE

도 면 명 DRAWING
 평창읍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계획도

발행번호 SHEET NO
 G - 06